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권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
----------	-----

발의연월일 : 2018년 9월 21일
발 의 자 : 권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용석, 이세열,
이동현, 김호평, 김정환,
채유미, 최 선, 정진술,
최기찬, 신정호, 이호대,
이준형, 장상기, 강동길,
송재혁, 한기영, 이현찬,
박기열, 이광호, 채인묵,
이태성, 임종국, 권수정,
문장길, 전병주, 권순선,
김화숙, 강대호, 김정태,
봉양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는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전문 약사의 도움 없이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 구입하거나, 경증질환 환자 임에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응급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

의를 제공하고, 공공 야간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공공 야간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윤리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시장이 정하는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준수토록 함(안 제5조).
- 라.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며,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홍보매체나 방송·언론 등을 통해 공공 야간약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공공 야간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사. 구청장이 직접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공공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약사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 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야간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무 및 준수사항)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 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야간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야간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간약국 참여 약사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발간하는 공보·홍보매체나 방송·언론 등을 통해 야간약국을 홍보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야간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야간약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야간약국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야간약국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간약국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직접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약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야간약국(심야약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받은 약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장으로부터 야간약국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지원)제1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야간약국의 관리)제1항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조사비용은 서울시 해당 부서 사업 담당 공무원이 추진하는 선행 운영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 * 같은 조례안 제7조(지원)제2항 홍보비용은 시보유 영상매체 및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시 전광판, 미디어 보드 홍보 등)
- * 같은 조례안 제10조(포상)는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지원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개소 수는 선행 운영사례(서초구:2개소)를 준용하여 자치구별 2개소씩 총 50개소로 하며, 추계기간동안 자치구 수 및 지원개소 수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원기준 금액은 선행 운영사례(서초구¹⁾, 경기도²⁾)를 준용하여 야간운영 및 공휴일 구분없이 1개소당 시간당 3만원으로 3시간(22:00~01:00)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공공 야간약국 운영은 위탁운영이 아닌 서울시 직접 운영으로 하되, 선행 운영사례인 서초구는 자치구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운영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상승률 반영

다. 추계기간 : 5년

1) 서초구의 경우, 심야약국 총 2개소 22:00~01:00 운영 예정으로, 시간당 3만원씩 월 270만원, 1개소당 27,000천원(사업기간 : '19.3월~12월 / 10개월)지원예정

2) 경기도의 경우 심야약국 총 9개소로 22:00~01:00 운영하며, 심야약국과 공휴일 약국 모두 시간당 3만원씩 365일 기준 지원하여 1개소당 32,850천원 지원함(2018년 기준)

라. 방법

- 연간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는 공공 야간약국 지원개소 수에 1개소당 지원기준 금액을 곱하여 산출
 - 공공 야간약국 지원개소 수 : 50개소(25개 자치구 x 자치구별 2개소)
 - 연간 1개소당 지원기준 금액 : 32,850천원(시간당 3만원 x 1일 3시간 x 365일)
- 비용추계 2차년도부터 인건비 상승률 3.2% 적용('19년 예산안 작성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8,755,190천원(연평균 1,751,0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1,642,500	1,695,060	1,749,300	1,805,280	1,863,050	8,755,190
	소계(b)	1,642,500	1,695,060	1,749,300	1,805,280	1,863,050	8,755,190
□ 총 비용(b-a)		1,642,500	1,695,060	1,749,300	1,805,280	1,863,050	8,755,190

주 : 총비용과 연평균 비용은 천원이하 반올림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2180-7944

e-mail : hiru90@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sum_{i=1}^5$ (연간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_i

= 8,755,19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

- 연간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 공공 야간약국 지원개소 수(50개소) x (전년도) 개소 당 지원기준 금액 x 인건비 상승률(3.2%)

- 공공 야간약국 지원개소 수 : 50개소(25개 자치구 x 자치구별 2개소)
- 1개소당 지원기준 금액 : 32,850천원(시간당 3만원 x 1일 3시간 x 365일)
- 인건비 상승률 : 3.2%(1차년도는 인건비 상승률 미반영)

(단위: 개소,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공공 야간약국 지원개소 수(A)	50	50	50	50	50	-
공공 야간약국 운영 경비 (B=A×1개소당 지원기준금액×365일)	1,642,500	1,695,060	1,749,300	1,805,280	1,863,050	8,755,190

- 주: 1. 1개소당 지원기준 금액은 선행 사례(서초구, 경기도)를 준용하여 시간당 3만원(1일 3시간, 365일 운영 기준)으로 연간 32,850천원에 인건비 상승률(3.2%) 적용하여 추계(단, 비용추계 1차년도는 인건비 상승률 미반영)
2. 천원이하 반올림